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40

2016. 10. 30

중앙부처 청 · 관사 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염철호 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요약

- 법원,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등 중앙부처 청 · 관사 건축사업 대상은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국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건축물이 많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요구 되는 시설로서 면밀한 성과관리 필요
- 하지만 현재의 사업평가는 주요 재정절차의 준수 여부, 면적 및 공사비 등 재정적 측면에서의 단편적 · 일률적 검토가 대부분으로, 기획과정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를 바탕으로 사업 전 과정에 걸친 가치사슬 (Value Chain)을 구축하는 등 선순환적인 관리체계로 개편 필요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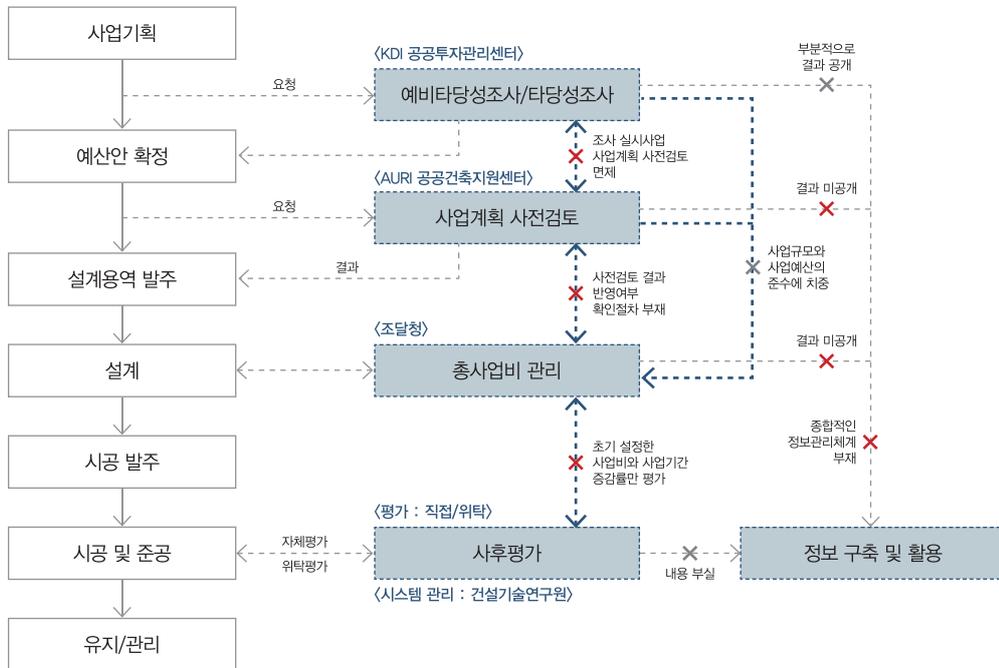
- 사업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기획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안에 평가분야, 평가 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성과목표 등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성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 사업 중간과정 및 사후평가에서는 기획과정에서 설정한 성과목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거나 달성 되었는지 등 성과관리의 합리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
- 사업의 기획에서 사후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여 타 사업에 참고 · 반영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 현행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

- 단계별 사업평가의 연계 및 환류체계 미흡

- 사업계획 사전검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사후평가 등 사업 과정에서의 각종 평가제도의 대상과 평가주체가 각각 다르고, 평가결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사항 등을 DB화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



단계별 사업평가의 연계 및 환류체계 미흡

- 대규모 토목사업 위주의 평가에 따른 중소규모 건축물의 성과관리 부재

-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평가제도에서 공사비(사업비) 200억 원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사업은 전체 공공건축 건수 중 4.3%에 불과

- 사업비 위주의 평가 및 성과관리 수행으로 품질 및 이용 측면의 성과관리는 미흡

- 예비타당성조사는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중은 낮고 계량분석 위주의 경제성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후평가제도에 따라 각 단계별로 용역 또는 시공 등이 준공된 이후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사업 수행 내용도 총공사비, 공사기간, 설계변경에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성과관리가 어려운 실정

공공건축 사업규모별 적용 평가제도

사업 (공사)비		50억 원 미만	50억 원 ~ 100억 원	100억 원 ~ 200억 원	200억 원 ~ 300억 원	300억 원 ~ 500억 원	500억 원 이상
공공건축 비율 (13년 기준)	건수	95.70% (12,910건)	2.22% (299건)	1.10% (148건)	0.70% (95건)		0.28% (38건)
	공사비	35.42% (6조2,517억)	11.46% (2조234억)	11.63% (2조537억)	16.84% (2조9,720억)		24.65% (4조3,521억)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	×	×	×	×	●
타당성조사 (사업비 및 공사비)		×	×	×	×	×	● (예타면제)
투·융자심사 (사업비)		● (자체심사)	● (시/도심사)	● (중앙심사)	● (중앙심사)	● (중앙심사)	● (중앙심사)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사비)		×	●	●	●	●	● (예타면제)
설계 적정성 검토 (사업비)		×	×	×	●	●	●
사후평가 (총공사비)		×	×	×	×	●	●

※ 공공건축 비율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3년도 종합건설업 계약액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사후평가제도의 실효성 미흡

- 사후평가 실시 및 게재 건수가 극소수에 불과하고¹⁾, 추정수요, B/C, 공사비, 공기 등 예측치와 건설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측정한 실제 결과치를 단순 비교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평가 및 유사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만 기재

■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 초기 기획과정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수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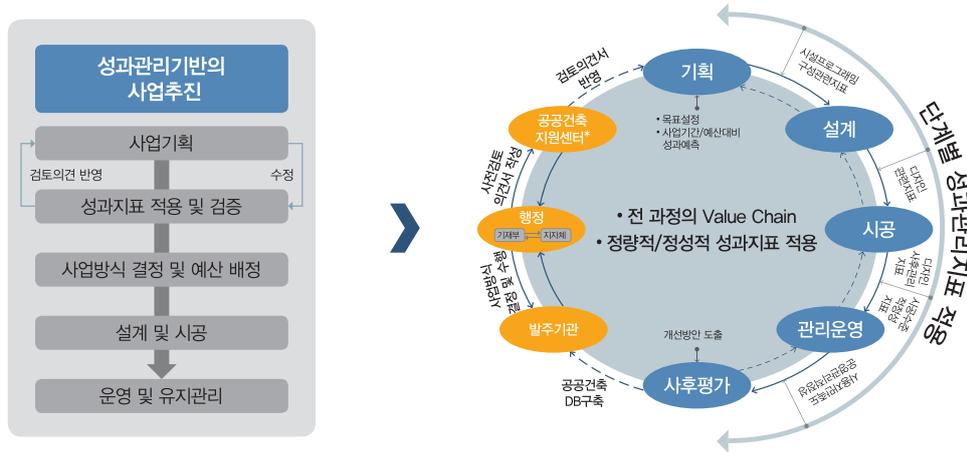
- 초기 기획과정에서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예산편성, 설계, 시공, 사후평가, 관리·운영에 이르는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기획 시 설정한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성과평가와 DB화를 통한 선순환체계 마련

-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단계별 점검과 평가가

1) 2015년 3월 9일 기준, 건설사업 정보포털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는 사후평가 결과 405건 중 공동주택, 발전시설 등을 제외한 공공건축 사업은 총 5건에 그침

DB화됨으로써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축적됨으로써 향후 유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관리체계 구축



성과관리 기반의 사업추진체계 구축

※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4), 정책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건축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연구, p.152.

- 공공건축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마련
 - 대규모 토목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비 관리 위주의 현행 사후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가 다양하고 사업 유형별로 특성이 다른 공공건축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평가체계 마련

2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의 평가방식

-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의 심사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됨²⁾
 - 1단계 : 취득대상사업의 기금 지원 대상 여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0조)
 - 2단계 : 주요 재정제도 준수 여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1조)
 - 3단계 : 타당성 및 적정성 심사(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2조 및 제13조)
 - 4단계 : 기금 수입 규모 반영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4조 및 제18조)

2) 기금청(기획재정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청·관사의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사전협의, 주요 재정제도, 「정부청사관리규정」상의 청사수급관리 계획 등 사전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

- 사업의 타당성 심사에 있어서는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철거 대상, 택지 개발지구 편입, 협소, 직제 제·개정, 노후화, 임차 청사 매입전환 등을 고려

신규 공용재산의 심사 적용 대상 우선순위 기준

구분	세부내용	
① 안전도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진단 결과 D, E 등급의 권고내용을 감안	
기타사유	② 철거대상	도시계획, 도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철거(지자체가 주민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적정한 보상을 통해 청사 이전을 요청할 경우 신축 타당성을 우선 고려)
	③ 택지개발지구 편입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취득
	④ 협소	당해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단위건물 내의 순 사무실 면적/단위건물 내에 부여된 정원)이 기준면적 보다 60% 이하인 경우
	⑤ 직제 제·개정	직제 제·개정에 따른 신규 청사 소요 발생
	⑥ 노후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30년 이상된 청사
	⑦ 임차청사 매입전환	연간 임차비 수준이 매입비의 10% 이상인 경우
	주거용 공용재산의 추가 타당성 심사 적용기준	⑧ 관사입주율
⑨ 임차관사 매입전환		임차비가 매입비의 90% 이상인 경우

※ 출처 : 기획재정부(2014),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 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과 ‘청사시설 기준표’를 바탕으로 기준 준용 여부를 심사하고, 조달청의 공사 유형별 단위 면적당 기준단가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등을 기준으로 시설비, 토지매입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을 심사
- 이처럼 사업 선정에서의 평가는 주요 재정절차 준수 여부, 면적 및 공사비 등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일률적인 검토가 대부분으로,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획의 충실성 및 사업 추진체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향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 선도적이고 우수한 공공건축물 창출 유도
 -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대상은 법원,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등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국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공 건축물이 많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요구되는 시설
 - 따라서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이 단순한 시설물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고, 후속적으로 추진되는 유사 청·관사 등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 및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 매년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1980년에 조성한 청·관사 내용연수가 40년에 도달하고 있어 재건축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국유 재산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가 녹록치 않음
 -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준공시설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
-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관리의 선순환체계 구축
 - 외교부, 법원과 같이 전담조직을 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과정이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준공사업에 대한 일회성의 평가를 넘어서 기획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타 사업 추진 시 참고·활용될 수 있도록 선순환체계 구축 도모

■ 해외(미국, 일본, 영국) 국가 공공건축물 평가체계의 시사점⁴⁾

- 기획(사업 선정)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성과목표 설정
 - 일본, 미국, 영국 사례 모두 사업선정·기획단계의 평가는 해당 사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

3) 기획재정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전년도 준공된 청·관사 중 신청한 사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포상하는 등 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추진 중

4) 미국 CI와 PBS의 PDR (Project Definition Rating Index), 일본 관청영선부 관청영선사업 평가체계, 영국의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와 DQI (Design Quality Index)를 대상으로 분석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평가는 안전성, 협소, 철거대상, 직제 개편, 노후화 등 신규 시설 건립의 타당성 심사에 편중되어 있어, 기획과정에서의 명확한 사업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수단이 부족
 - 또한, 해외의 경우 기획과정에서의 평가 관점이 매우 다양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우선순위와 관련 기준 등의 준수 여부만을 다룸
- 초기 설정한 사업목표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평가와 성과관리
 - 일본의 경우, 사업 선정의 평가 관점인 사업계획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사업 계획의 효과 세 가지 지표를 재평가와 사후평가 시에도 적용함으로써, 초기 기획과정에서의 사업목표와 주안점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
 - 미국 PDRI, 영국 KPI와 DQI 또한 추진과정에서 초기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와 확인을 거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침 설정에 활용
 -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사업의 공용재산취득계획안에서도 신규사업 선정 시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현황이 추가되는 데에 그쳐 사업의 목표와 주안점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해외의 경우, 성과평가·성과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어 단계별 평가결과의 축적, 확인,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계별 성과평가체계가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 또한 나뉘어져 있어 단계별 평가결과의 축적이나 확인,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조치 시행 및 정보 제공 등 환류체계 구축
 - 일본의 경우, 모든 관청영선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평가 카르텔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관련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DQI의 경우, 사용 단계(In Use)까지 활용함으로써 현재 프로젝트와 다음 프로젝트의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사용자 의견을 수렴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의 성과평가를 2014년도부터 시행해 왔으나, 연간 수행되는 많은 사업의 수, 1조 원 가까운 관련 예산규모,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다수 부처 담당조직의 비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을 통한 환류체계는 부재한 실정임

5) 일본 관청영선부 사업평가 카르텔 시스템 (<http://www.mlit.go.jp/tec/hyouka/public/jghks/chart.htm>)

3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평가모델과 평가지표

■ 취득계획안 심사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의 연계

- 사업계획안에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성과관리계획’에는 해당 사업의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성과목표를 포함
 -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심사를 거친 사업의 적정성 심사 시 사업청이 제시한 ‘성과관리 계획’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조정하고 확정함으로써, 사업의 특성과 사업청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
- 대부분 사업예산 확정 후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득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행 ‘사업의 적정성 심사’ 항목과 ‘사업계획 사전검토’ 항목을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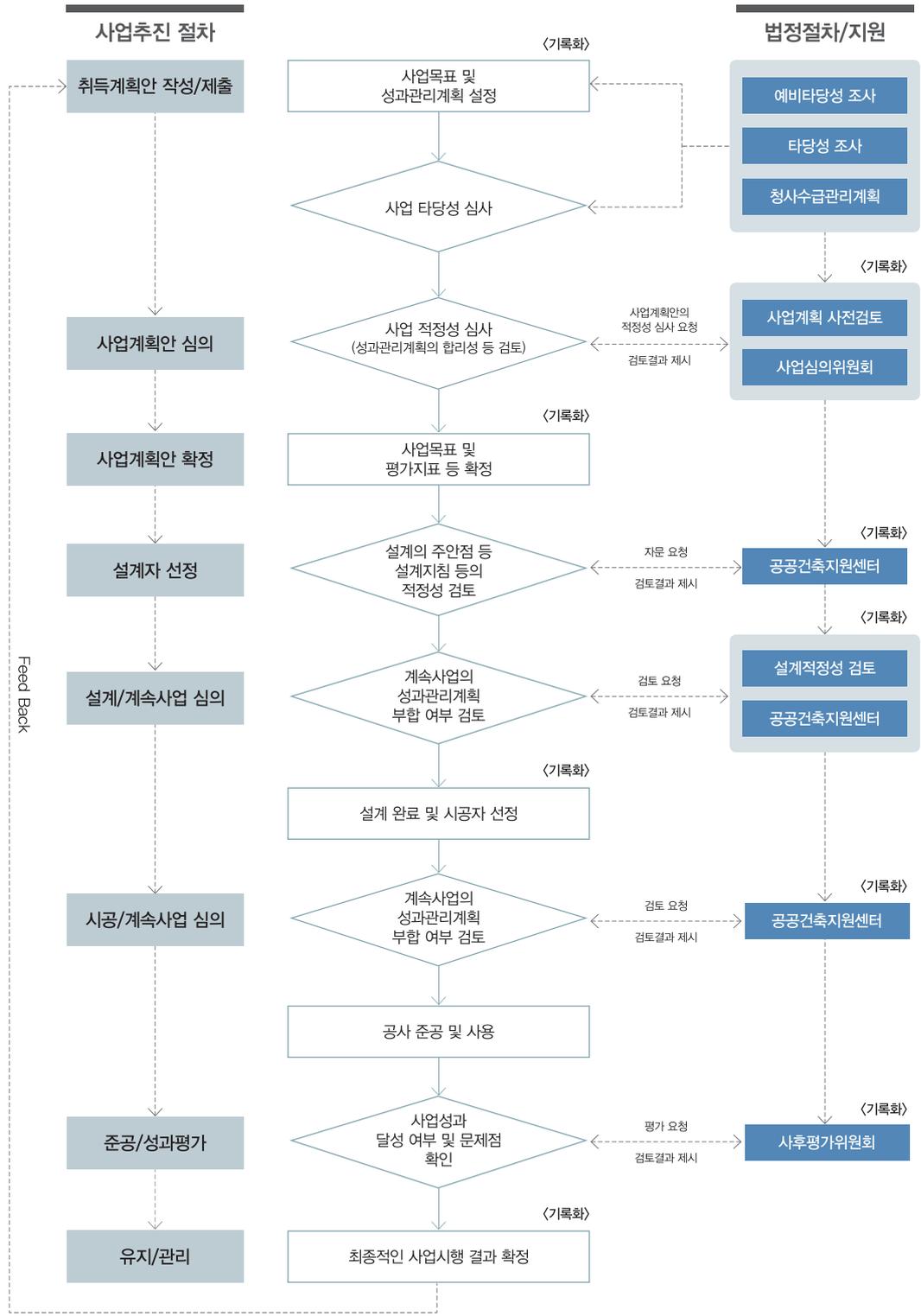
■ 사업 기획단계의 평가지표와 사업 종료 후의 평가지표로 구분

- 사업청이 제출한 취득계획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주로 청·관사 건축사업의 취지와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충실한 기획안이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체제가 갖추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 사업 종료 후 평가에서는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이나 시공의 질적 수준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 사업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 최근 해외의 공공사업에서는 사업주체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충실히 알리는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의 기록과 공개는 설명책임을 이행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사항
- 사업의 기획, 심사, 진행, 중간 점검, 최종 완료,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하여 해당 사업 및 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 평가모델



공공재산취득사업 평가모델

■ 평가지표

• 기획단계의 사업의 적정성 심사기준

- 현행 '사업의 적정성 심사' 항목과 '사업계획 사전검토' 항목을 결합하고 '성과관리 계획'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여, 적정성 심사의 내실화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

구분	항목	심사기준
1. 사업기획의 체계성		
예산계획의 합리성	예산 규모	•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용형별 단위 면적(1㎡)당 기준단가 등 유사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예산 편성	•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예산의 배분·편성 비율의 적절성
시설계획의 적절성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 사업특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입지 설정의 타당성 • 외부공간 활용, 증축 고려 등 토지활용계획의 구체성
	주요 기능의 배분	• 해당 사업의 목표에 따른 주요 기능 설정의 적절성 • 변화하는 행정업무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능 반영 여부
	기능별 면적 규모	• 면적기준 등과의 부합 여부 • 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능 설정에 따른 차별성 반영 여부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 실내외 공간 및 주요 시설물 계획과 관련한 고려 사항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품격 제고 등	• 각별한 기술성의 고려, 건축의 예술성, 이용자의 편의 증진, 주변 환경과의 조화, 경제성 향상, 범죄·재해대응 등 시설안전계획 등의 실현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수준
	유사시설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방안	• 주변에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분포현황과 활용실태 • 시설 건립 후의 주변 관련 시설과의 연계방안
운영계획의 적절성	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적절성	• 위탁·임대 등 별도의 운영계획 • 시설 운영을 고려한 예산·시설계획 주요 사항의 구체성
	시설 운영조직의 적절성	• 시설 준공 후 운영조직의 구체성 • 사업 기간 중 준공 후 운영주체의 의견수렴방식의 적절성
	시설 운영예산	• 시설 운영예산 확보 계획 • 시설 운영 관련 예산규모·예산조달 방식의 적절성
2. 사업관리의 합리성		
사업추진계획의 합리성	사업기간	• 사업특성 및 규모에 부합하는 사업기간 설정의 적절성
	사업관리체계	• 사업관리자(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 사업관리자(조직)의 일관성
	용역발주 및 관리방식	• 설계 등 용역 발주 및 관리방식의 적절성 • 시공 발주 및 관리방식의 적절성
성과관리계획의 합리성	평가지표의 설정 등	•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가중치 부여	•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별 가중치 설정의 적절성

• 사업 종료 후 평가지표

- 평가분야별로 가중치와 필수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청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지표 또는 추가적인 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표에 따른 성과목표를 제시하되,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성과관리 도모

평가분야	평가지표 (음영부분 : 필수 평가지표)	성과목표 (예시)
예산운용의 합리성 (30~50)	① 총사업비 준수 여부	총사업비 범위 내 사업 완료
	② 예산변경·설계변경 여부	사업기간 중 예산변경 제로 달성 설계변경 건수 5건 미만
	③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	총사업비의 최대 5% 절감 달성
	④ 단계별 예산집행의 적절성	예산아월 제로 달성
사업내용의 우수성 (30~50)	① 업무의 효율성	대민업무시설 1층 집중배치, 회의공간 확충(유사시설 대비 +20%),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 행정·대민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안점
	②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확보, 건물제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안점
	③ 쾌적성 및 친환경성	직원 휴게시설 확충(유사시설 대비 +20%), 녹지공간 확충(유사시설 대비 +2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쾌적성 및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주안점
	④ 시설 안전성	침입, 범죄 등에 대비한 CCTV 등 범죄예방 요소 도입, 민원인 공간과 업무공간의 층별 분리 및 출입통제 등 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한 주안점
	⑤ 주변특성 및 지역사회 요구 반영	옥외 휴게 및 체육시설 외부 개방, 인접 공공청사와 주차공간 통합 이용 등 주변특성 및 지역사회 요구 반영을 위한 주안점
	⑥ 주변 경관과의 조화	외관 디자인 특화, 주변시설을 고려한 층수 계획, 다양한 수목 식재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주안점
	⑦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주출입구 주변에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민원인 휴게공간 확충(유사시설 대비 +20%), 원스톱 민원공간 확보 등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안점
사업관리의 합리성 (20~40)	① 사업기간 준수 여부	총 사업기간 내 사업 완료
	② 사업관리자(조직)의 전문성	전담부서 설치, 건축전문직 확보, 사업담당자 교육 훈련 시행, 사업시행 지침 운영, 외부전문가 활용,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업관리자(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③ 사업관리자(조직)의 일관성	사업기간 중 담당자 변경 제로, 단계별 사업관리계획 수립운영,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일관성 확보 방안 등 사업관리자(조직)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노력
	④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의 적절성	계획기간 내 설계 완료, 설계기간 중 설계내용 변경 건수 5건 미만 등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의 적절성 관련 주안점
	⑤ 시공 발주 및 관리방식의 적절성	계획기간 내 시공 완료, 민원 및 하자발생 건수 5건 미만 등 시공 발주 및 관리방식의 적절성 관련 주안점

4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개정(안) 제안

- 앞에서 제시한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평가모델과 평가지표의 적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청·관사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적정성 심사기준 도입) 제13조(면적·단가 기준)을 제13조(사업의 적정성 심사)로 개정하고, [별표 8]을 신설하여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규정
- (성과관리계획 수립기준 도입) 평가지표, 가중치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별표 9] ‘성과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신설
 - 각 사업청이 취득계획안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성과관리계획의 수립방법을 제시하고, ‘예산운용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관리의 합리성’ 3개 분야별 평가지표, 가중치, 성과목표(예시)를 제시하여 충실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 (계속사업 심사 시 성과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및 정도 심사) 제14조(계속사업의 심사·조정)에서 사업 선정 시 제출·조정된 성과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정도에 대한 심사·조정을 하도록 규정
-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실시 및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제6장 성과평가에서 별도 조항으로 제32조(공용재산취득사업의 성과평가)를 신설하여 종료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 성과관리, 성과평가 등과 관련한 정보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 또한, [별표 10] ‘공용재산취득사업 성과평가 세부지침’을 신설하여 평가 대상, 평가 내용, 평가 시기 및 방법, 성과관리시스템, 성과평가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염철호 연구위원 (044-417-9677, chyoun@auri.re.kr)

여혜진 부연구위원 (044-417-9840, hjyeo@auri.re.k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김대익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7 www.auri.re.kr

